

1. '단기체재' 로 재류 중인 분

⇒ '단기체재(90일)'의 재류 기간 갱신을 허가합니다.

2. '기능실습', '특정활동(외국인 건설 근로자(32호), 외국인 조선 근로자(35호))' 로 재류 중인 분

⇒ '특정활동(6개월/ 근로 가능)'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.

(주1)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.

※종전과 동일한 업무의 취업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“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관계하는 업무(기능 실습으로 종사한 직종, 작업이 속하는 “이행 대상 직종·작업 일람”의 각 표 내의 직종·작업(“7 기타”는 제외.))”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(주2) '특정활동(인턴십(9호), 제조업 외국 종업원(42호))'으로 재류 중인 분이 종전과 동일한 '받아들이는 기관' 및 업무로 취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허가합니다.

(주3) '단기체재'나 '특정활동(6개월/ 근로 불가)'이 일단 허가된 분도 대상입니다.

(주4) '특정활동(summer job(12호))'으로 재류 중인 분이 종전과 동일한 '받아들이는 기관' 및 업무로 취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'특정활동(3개월/ 근로 가능)'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.

3. '유학'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분이 취로를 희망하는 경우

⇒ '특정활동(6개월/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가능)'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.

(주1)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교육기관을 졸업(수료)한 분에 한합니다.

(주2) '단기체재'나 '특정활동(6개월/ 근로 불가)'이 일단 허가된 분도 대상입니다.

4. 그 외의 재류자격으로 재류 중인 분(위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분으로 취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)

⇒ '특정활동(6개월/ 근로 불가)'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.

(주) 위의 1~4에 관하여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.